

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만 나이 규정과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제17조)
- 만 나이 규정 정비(안 제18조)
- 불필요한 등록규제 정비(안 제19조)
 -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 폐지
 - 과도한 규제 완화

○ 정비대상 목록

연번	구분	조례명	조항	개정내용	소관부서
1	유형 ①	국어 진흥 조례	제6조	·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→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	소통담당관
2		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	제1조 제2조 제9조 제13조	·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· 민원사무 → 민원 · 민원사무편람 → 민원편람 · 민원사무처리기준표 → 민원처리기준표	소통담당관
3		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· 운영에 관한 조례	제3조	· 예산회계법 ·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→ 「국가재정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지방재정법」	행정지원과
4		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	제1조 제2조	·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→ 「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	자치행정과
5		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	·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품질인증 농산물 →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·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 품질 인증품(원양산 포함) →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(원양산 포함) ·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친환경인증 농산물 →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· 지원에 관한 법률」 친환경농수산물 ·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 →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안전관리인증기준	교육지원과
6		공인 조례	제1조	·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→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	민원여권과
7		정책실명제 운영 조례	제2조	·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→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	기획예산과
8		제안제도 운영 조례	제2조	·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 → 「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·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	기획예산과
9		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	제2조	·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→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지역경제과
10	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	제6조	·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→ 「기부금품의 모집 ·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	재 무 과
11		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	제2조	· 「건설기술관리법」 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	재 무 과
12		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	제7조	·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 →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」	재 무 과
13		수수료 징수 조례	제6조	·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→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·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→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·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	세 무 1 과

연번	구분	조례명	조항	개정내용	소관부서
14	유형 ①	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	제15조	·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	문화체육과
15		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	제9조	·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→ 「대기환경보전법」	환 경 과
16		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	제1조 제4조	·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→ 「물환경보전법」 · 민원사무처리규정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	환 경 과
17		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	제11조	·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→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	보건정책과
18	유형 ②	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	제1조	· 만 65세 이상 → 65세 이상	보건정책과
19	유형 ③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	제18조	· 상위법과 중복된 규제 폐지 (제18조제1호 삭제) · 상위법 위임범위를 초과한 규제 폐지 (제18조제2호 삭제)	지역경제과
			제21조	· 과도한 규제 완화: 신청 자격 규제 폐지 (제21조 삭제)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에 의해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만 나 이 규정 정비 및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특히 본 개정 조례안 중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18조 제2호 규정의 삭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단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다행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 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